

# 훈소에 의한 발화

송재철  
〈경찰청 조사지도관〉

이 화재는 출화 점포인 A약국의 정문인 빙지문과 상담실쪽 뒷문이 시정되었음이 현장 발굴로 확인(사진 1) 되었으므로 외부에서 침입하여 방화했을 가능성은 없었겠으나 주인과 그 측근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방화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방화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건물의 주인인 A약국 주인의 보험가입 내역은 다음과(표 1)과 같다.

그러나 이들 보험은 대부분 1년전 건물 매입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승계한 장기 화재 보험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에 대한 보험금액이 적은 뜻하여 건물에 대하여만 A회사분(표의 ⑤⑥)의 9백만원을 추가로 신규 가입하였을 뿐이며, 총 6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목적으로는 세입자들과 주변 이세자들에 대한 사후 예견되는 보상 문제, A약국 건물의 대지 28평만으로의 도심지 재건축시 건폐율, 허가 문제 등 이등적 측면보다는 문제만 예측될 뿐이어서 동기나 목적에 타당성이 고려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알리바이 문제도 배제되는 상황

이다.

또한 S마춤사는 실제 점포 규모보다 큰 규모의 보험 가입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출화 점포가 약국 내부인 점과 시정



〈사진1〉 A약국 상담실쪽 뒷문이 내측에서 시정되어 있다.

(施錠), 점포주와 종업원 등이 약국 주인의 형과 동석했던 점 등이 이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하는 점이다.

여타 점포들의 보험가입 내역에서는 보험 문제에 의문을 가질 만 한 점은 볼 수 없다.

(표1) A약국의 보험가입 내역

보험 회사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만 원)
A회사	생략	1. 1,800(동산)
		2. 1,000(증기 200) 동산 800)
		3. 1,000(건물 800) 시설 200)
		4. 700(시설)
		5. 400(건물)
		6. 500(건물)
B회사	"	1,000(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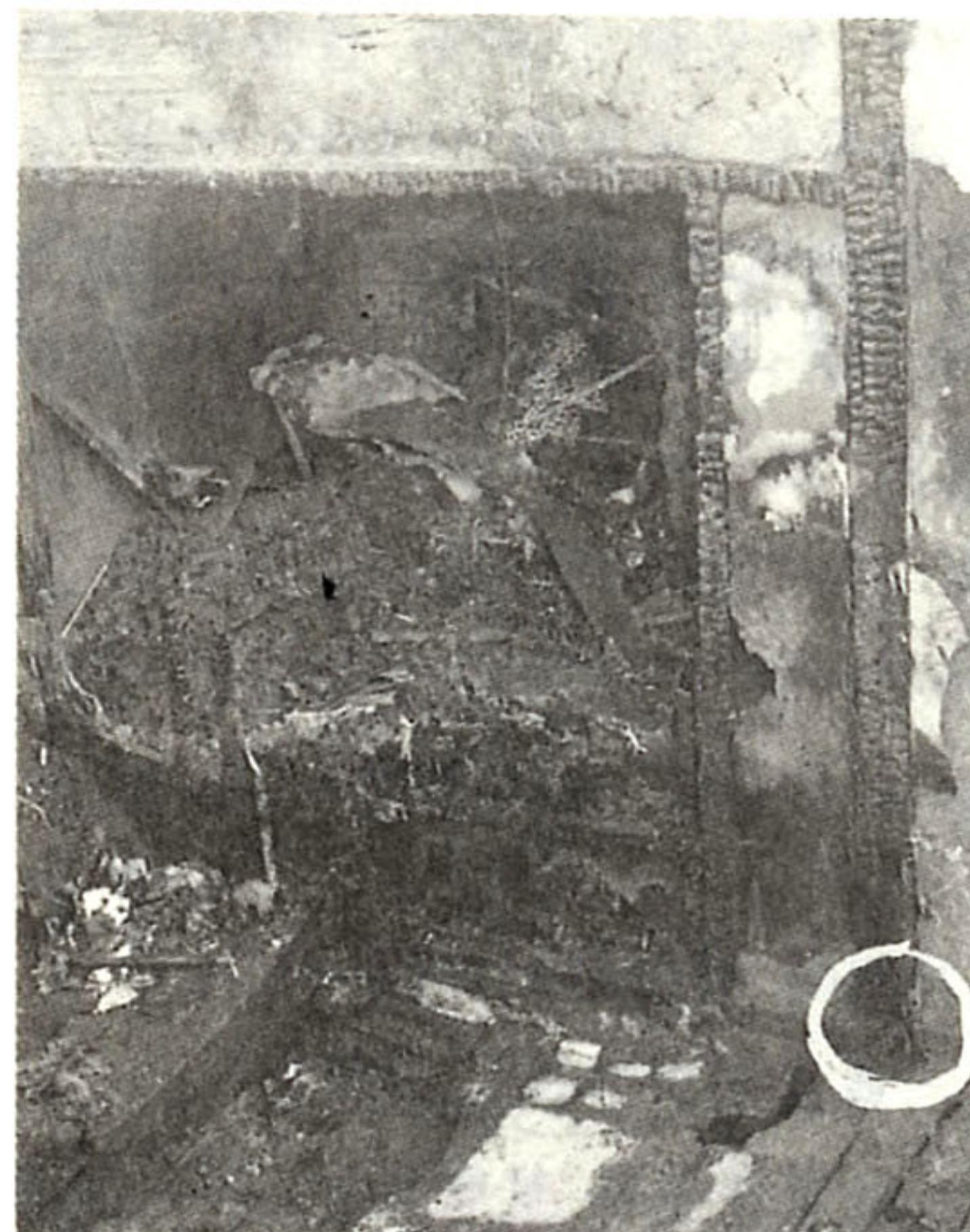
(표2) S마춤사의 보험가입 내역

보험 회사명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만 원)
A회사	생략	200(건물)
B회사	"	1,500(동산 1,300) 부동산 200)
C회사	"	600(동산)

목조 2층 건물이 소락된 현장이어서 저면 부까지 제거,

〈표3〉 여타 점포들의 보험가입 내역

가입자	보험 회사명	계약 기간	계약금액 (만 원)
B 가	A회사	생약	1,000 건물 800 가재 200
J 패션	A회사	"	600 건물 400 동산 200
M 이류점	A회사	"	500 동산 300 건물 200
P 과자	B회사	"	1,000 동 산 700 부동산 300
D 시푸드	A회사	"	300 짭기 100 동산 200



만들어야하는 작업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출화부는 약국 상담실이므로 이와 경계되는 이면부까지를 밟화부로 S마춤사의 간이 온돌 부분까지 소락물을 제거하고 밟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출화부 주 회벽의 지주목과 하방목이 훈소된 현상(사진2,3)이 발견되었으나, 저면부에는 일체 훈소를 유발할 수 있는 화덕 시설같은 구조물은 없었으므로 격벽의 이면부에 밀착 축조된 S마춤사측 간이온돌 새마을 보일러 화덕을 제거한 결과 지주목은 화전히 훈소(사진4)되어 축면 밟소된 상태였다.

서면부 목재의 이러한 훈소 현상은 밟소나 연소 강로가 형성되어 출화시까지는 발염없이 훈소만하는 관계로 통상 규화(禁火)했던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다.❷

▼ 사진4



〈사진2〉 A약국 상담실 저면부 회벽의 지주목과 하방목이 훈소(○ 표 부분)

〈사진3〉 사진2의 측면 부분(○ 표)



▲ 사진5

〈사진4〉 소락물을 제거한 후  
밟굴하기 전의 S마춤사 연탄  
아궁이

〈사진5〉 S 마춤사의 연탄  
아궁이의 밟굴 결과  
지주목에 훈소흔 형성

〈사진6〉 사진5의  
이면 부인 A약국의 훈소흔  
〈사진2, 3〉의 근접 사진으로서  
지주목이 축면 밟소되  
었고 연소는 내장합판재를  
따라 상승 확대



사진6 ▶